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02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정지권, 우형찬, 송도호,  
박순규, 추승우, 황인구, 김인호,  
송아량 의원(9명)

## 1.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종전의 표현 중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을 관계 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및 정의, 적용범위 등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된 사항을 반영함.

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19조의4 신설).

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신설).

사.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신설).

아. 어려운 한자어 표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소요자금, 기산 등)을 수정하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정함.

자. 다른 조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함(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를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로, “지원을 위해”를 “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로,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제60조”로, “부착하거나”를 “달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를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로,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자금”을 “구입 자금”으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기관”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소대행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용자한도액”을 “재정지원 한도액”으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는”을 “용자 조건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를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를 “대출한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자된 자금을 대하여”를 “시장은”으로, “호의 경우 용자금리의 감

면 또는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용자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하거나 용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소요되어”를 “들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은행법」 제2조제2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용자대상업체에”를 “용자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금융기관”을 “수탁은행”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도”를 “매년”으로, “연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를 “연도의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최하는”을 “개최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정의”를 “조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출 한다”를 “대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제한”을 “있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을 “값을 용자금이 남아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를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완료하여야”를 “마쳐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착하여도”를 “달더라도”로, “선행하고,”를 “먼저 실시한 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등)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로 한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명령

제4장(제21조 및 제2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재원의 확보 등

제21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재정지원자금”을 “따라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으로, “상환조건에 의하여”를 “상환조건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③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대기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을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의 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u>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u>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u></p> <p>2. “이륜차”란 「<u>자동차관리법</u>」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u> ----- ----- ----- <u>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 이</u> <u>바지하는 -----.</u></p> <p>제2조(정의) ----- -----.</p> <p>1. ----- ----- <u>제60조</u> ----- ----- ----- <u>달거나</u> ----- ----- -----.</p> <p>2. ----- 「<u>자동차관리법</u>」 제3조 ----- ----- -----.</p>

3. “직접구이 음식점”이란 숯,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육류, 생선류 등을 직접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삭 제>

4.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  
-----  
-----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따른다.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서울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자금 (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용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생략)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대상) -----  
-----  
----- 구입 자금-----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

1. (현행과 같음)
2. -----  
--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소대행기관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 재정지원 한도액-----  
----- 시장-----  
-----  
-----.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자금의 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용자금리 :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용자금리의 감면 또는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용자에 관한 사무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  
--- 용자 조건은 -----  
--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 이하의 범위-----
3. ----- 대출한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  
-----

② 시장은 -----  
-----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용자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하거나 용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

1. (현행과 같음)
2. -----  
-----  
-- 같은 종류-----  
-- 들어-----

③ -----  
-----  
-----  
----- 따른다.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  
-----

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용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용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  
-----  
-----  
-----  
-----  
-----  
-----  
-----

② 수탁은행-----  
-----  
-----  
-----  
-----.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 매년 ----- 연도의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선출하며 -----  
-----  
-----

로 한다.

1. ~ 5. (생략)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생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개의(開議)-----  
-----  
--.

⑤ ----- 개최할 -----  
-----  
-----.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  
-----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  
----- 넘는 -----  
-----  
--.  
-----  
----- 조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  
-----  
-----





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 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

-----  
-----.  
-----  
-----.

1. (현행과 같음)
2.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  
-----  
-----.  
-----  
-----.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  
-----  
----- 날부터 -----  
-----.

② -----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  
-----  
-----  
-----

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분착하여야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③ -----  
-----  
----- 날부터 -----  
----- 만  
----- 쳐야 -----.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  
-----  
----- 달  
----- 더라도 -----  
-----  
----- 먼저 실시한 뒤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제1호-----  
-----  
-----  
-----  
-----.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  
-----.

제19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등)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2. 이륜차

3. 직화구이 음식점

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의4를 신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세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은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항운영자가 수립한 대기개선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본 조례개정안 제19조의2에서는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용도 자동차(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 화물자동차)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제22조에서는 시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어린이 통학버스 및 운송용 화물자동차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기 시행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근거	예산과목	2019년	2020년
제19조의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380,000	1,500,000
	LPG 화물차 신차지원	200,000	4,000,000
제22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50,600	340,600
	환경의 날 운영지원	54,000	147,680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1,144,029	547,453

- 그 외의 개정 조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명 및 근거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개정조례안 제19조의4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공항운영자가 대기개선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은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항운영자가 수립한 대기개선계획이 없어 사업규모나 지원예산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33

e-mail : ehdus0@seoul.go.kr